

# 2024년도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 안내문

## 분야별 세부내용

### [1] 주거환경분야 (기숙사 확충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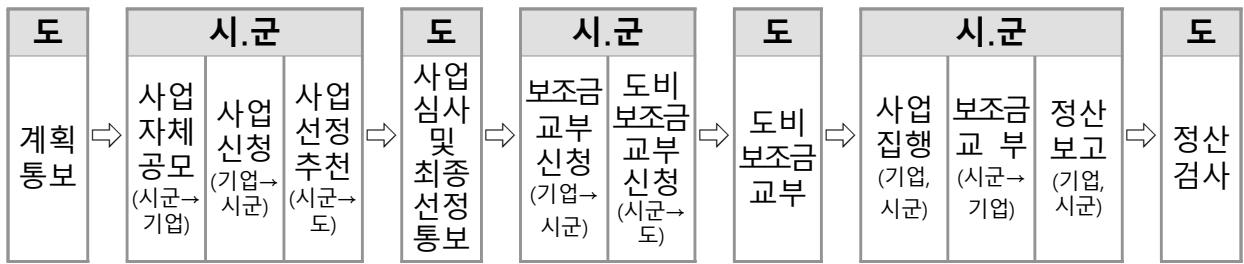
- 사업목적 : 근로자 주거 개선을 위해 기업의 기숙사를 확충하여 근로자 사내 복지 향상 및 기업 인력난 해소
- 대 상 : 도내 중소기업(제조업)
- 지원내용 : 기업 기숙사 신·증축 지원 ※기숙사 리모델링 非지원
  - 신·증축 : 설계비 및 건축비 지원

#### < 건축법상 용어 정의 >

- 신축 : 건축물이 없는 대지(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)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(築造)하는 것
- 증축 :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, 연면적,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

- 지원규모 : 15개소 ※충북도 전체 규모/ 예산 한도 내 조정 가능
    - (10인 이상) 7개소, (5인 이상 10인 미만) 8개소
  - 지원한도 : 입주 예정인원에 따라 상이\*
    - (10인 이상) 최대 1.5억원, (5인 이상 10인 미만) 최대 1억원
- \* 입주예정인원은 공고일 기준 고용인원으로 산정,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("23.12월 기준) 제출 필수
- \*\* 기업 자기부담률은 총사업비의 50% 이상 (부지 및 현물 제외), 부가세 제외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지원금액 신청 및 자기부담률 산정해야함
- \*\*\* 사업변경으로 인한 총사업비 감액 시 최초 보조율에 따라 보조금 감액 가능

## ○ 추진절차



## ○ 유의사항

### - 기숙사 부지

- 업체 명의 + 지목 ‘공장용지’ 또는 ‘대지’ 인 경우 신청 가능  
※대표자(단, 개인기업인 경우 예외 인정), 대표자 친인척 명의 등 불인정
- 해당권이 설정된 부지는 신청 가능하나 후순위로 선정 예정  
(기타 지상권, 전세권 등 부지 설정 권리 확인 예정)
- 부지 자체 확보만 되면 신청 가능, 사업장 내외 무관함

### - 기숙사 증축

- 업체가 이미 기숙사 신축 사업 진행 중이면, 사업비 보존 의미의 보조사업 신청은 불가 ※임대건축물 신청 불가(소유주 동의서 제출해도 불가)

### - 건축물 내 물품(가구, 가전 등) 지원 불가

### - 입주자 1인당 최소 주거면적 14㎡이상\* 준수(설계서 확인)

\*「기숙사 건축기준」(국토교통부고시 제2023-151호, 2023.3.15.제정) 준용

### - 기숙사 목적으로 최소 10년간 사용·유지하여야 함.

※준공후 부기등기 필수, 정산시 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

### - 2024년 이내에 착공할 것

### - 사업계획서 작성 시, 사전절차 및 인허가 승인 완료 여부 등 관련 증빙자료 제출

※사전절차 및 인허가 승인 완료 여부에 관한 사항 정량평가점수에 반영

### - 기숙사 운영 계획 수립 및 운영·관리 철저

※운영 계획, 운영 주체, 운영비 확보, 시설 관리 등

### - 기숙사는 근로자에게만 제공, 외부인 임대 및 사용 불가

### - 기숙사 입사 근로자는 이용하는 기숙사로 주소 이전(권고)

## [2] 근무환경분야

○ 사업목적 : 근무 및 작업환경 개선을 통해 위생적이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직원복지 향상과 인력난 해소를 도모하여 기업 경쟁력 제고 기여

○ 대 상 : 도내 중소기업(제조업)

○ 지원내용

- 작업장 내 화장실, 샤워장, 탈의실, 휴게실, 구내식당 등 공용 시설 설치 및 개보수 ※ 기숙사 내 공용시설 개보수도 지원 가능

- 작업장 내 환기·집진 시설 설치 및 개보수

- (신규) 가족친화시설(사내 어린이집, 가족화장실\*, 수유실 등) 설치 및 개보수  
※화장실 내 기저귀 교환대, 영유아 거치대, 어린이용 위생 설비 등과 같은 영구설치 품목 지원 가능

※물품(비품) 구입은 비지원(예시-냉난방기, 신발장, 식탁, 의자, 테이블 등)

○ 지원규모 : 34개소(가족 친화시설 20개소 포함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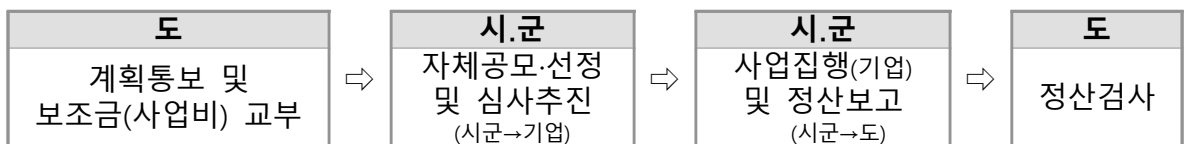
- 진천군 약3~4 개소 선정 예정 ※예산 한도 안에서 조정 가능

○ 지원한도 : 개소당 15,000천원 이내

\*기업 의무부담률은 총사업비의 30% 이상(부지 및 현물 제외), 부가세 제외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지원금액 신청 및 자기부담률 산정해야함

\*\* 사업변경으로 인한 총사업비 감액 시 최초 보조율에 따라 보조금 감액 가능

○ 추진절차



○ 유의사항

- 시설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·관리 철저(운영 계획, 시설 관리 등)

- 2024년 이내에 착공 및 준공할 것

- 기업체 명의 건물(사업장)내부 근무작업환경인 경우 신청 가능

※임대건물 신청 불가

## 공통 유의사항

### ○ 평가가점 사항 (3점)

- 「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기업
  - 「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」 제2조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기업
  -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7조,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
  - 「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
  - 「충청북도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」 제8조에 따른 고용우수기업
  - 「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 조례」에 따른 중소기업대상 기업
- ※ 지정(확인, 인증, 상장 등)서 유효기간 이내일 경우만 가점사항, 유효기간 없을 경우, 수상일로부터 3년 이내일 경우에만 가점 가능

### ○ 기업 중복 수혜 방지

- 최근 3년간('21~'23년) 동일 기업체에서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으로 지원받은 지방보조금 혜택이 3건 이상 또는 지원금액이 총3천만원 이상일 경우, 다수의 중소기업에게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 혜택 기회를 제하고자 공모 신청 제한
- 분야별(주거, 근무) 중복지원 불가.

( 예시 )

- 주거환경(기숙사 증축) 및 근무환경(휴게실 개보수) : 지원 불가
- 근무환경(화장실 개보수) 및 근무환경(구내식당 설치) : 1개만 지원
- 지원한도(15백만원 자부담30% 이상내)에서 근무환경(샤워실, 휴게실, 화장실) : 지원 가능

### ○ 보조사업 시공업체 선정시

- 공사경험이 많은 도내 시공업체를 선정하고, 공사 설계 및 시공에 대한 감리를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사전예방 조치를 강구할 것

### ○ 사업 추진 중도 포기시

- '24년 기업 정주여건 개선 공모사업 최종 선정 후 기업체에서 임의로 선정 사업 추진 포기 할 경우, 향후 2년간('25~'26년)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 공모 신청 제한

# 참고 1 주거환경 (자금융자 지원)<sup>신규</sup>

-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(이차보전) 지원
  -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\_ 기업 정주여건(기숙사) 조성지원 자금
- 사업목적 :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(주거지원 분야) 폭발적 수요\*에 대응하고 향후 지속적인 수요 증가 예상에 따른 선제적 대안 마련
- 대 상 : 도내 중소기업(제조업 영위, 공장등록기업)
- 지원내용 : 기숙사 신·증축을 위한 시설자금 금융권 대출 이차보전
- 지원규모 : 자금 50억원 \* 은행 협약자금
- 지원요건 : 기업당 최대 3억원, 3년간(1년거치, 2년상환) 융자, 저금리 대출(23.4분기 기준 2.71%)<sup>변동금리</sup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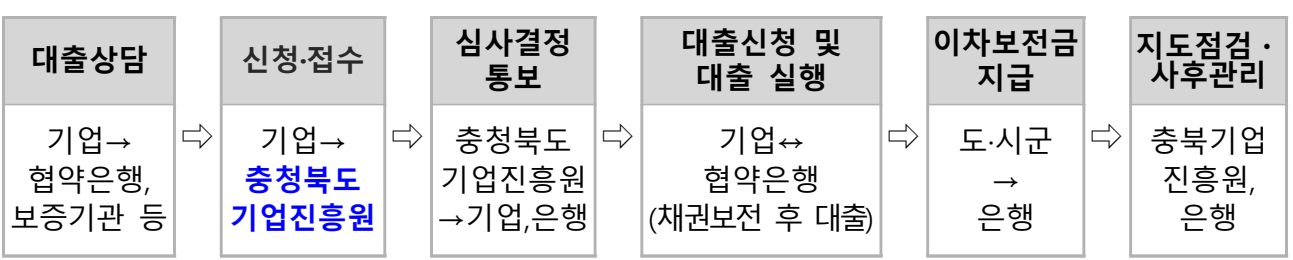
융자한도	융자기간	세부요건
3억원	3년 (1년거치, 2년상환)	- 상시근로자 5인 이상, 기업체 소유 건축부지 확보 선행 - 건축 공정률에 따른 분할지급 등

## ○ 추진방안 : 은행 협약자금 활용

재원조성 (취급은행)	기업부담 대출금리	이차보전	융자비율	이차보전 예산	비 고
국민, 기업, 농협, 산업, 신한, 우리, SC제일, 하나	분기별 변동금리 (23.4분기 2.71%)	3%	소요자금 (부가가치세 제외)의 80% 이내	개소당 3억원 (도비 0.68/시군비 1.02)	

※취급은행 협의 하에 융자기간 연장 가능하나 이차보전금은 지급되지 않아 금리변동 있음

## ○ 추진절차



- 신청기간 : '24. 1. 15.부터 자금 소진시까지
- 접수 및 문의 : 충북기업진흥원(기업지원부, ☎043-230-9751,9729)

## 참고 2 관련 법률

-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(중요재산 처분의 제한)
  -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, 그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  -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  - 1.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
    - 2. 양도, 교환 또는 대여
    - 3. 담보의 제공
  
-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(중요재산의 부기등기)
  -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(附記登記)를 하여야 한다. 다만,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취득·관리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   - 1. 해당 부동산은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
    - 2.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간 내에 해당 부동산을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, 양도, 교환,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
  
-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4조(중요재산의 부기등기)
  -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중요재산에 대한 부기등기 및 부기등기말소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○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(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)

-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(이하 “실적보고서”라 한다)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실적보고서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지방보조사업자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에 따른 실적보고를 한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실적보고를 완료한 것으로 볼 수 있다.

1.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
2.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
3.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

○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(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 제출)

- 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”이란 같은 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를 말한다.